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

국토교통부

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

- 제1조(목적) 이 시행지침은 「방첩업무규정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규정"이라 함은 「방첩업무규정」을 말한다.
 - 2. "소속기관"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.
 - 3. "산하기관"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.
 - 4. "외국인 근무자"란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, 파견,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(이하 "본부"라 한다),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(이하 "각급기관"이라 한다)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.
 - 5. "방첩정보포털"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.
 - 6.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.
- 제3조(적용) 이 시행지침은 본부 및 각급기관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(이하 "소속 구성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하되, 각급기관의 장은 이 시행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4조(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)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.
 - 1. 본부: 운영지원과장
 - 2. 소속기관 : 서무업무 담당 과장
 - 3. 산하기관 : 방첩업무 담당 실ㆍ처장
 -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규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
 - 2.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업무
 - 3.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규정 제정·시행에 관한 업무(본부 방첩담당관만 해당한다)

- 4.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
- 5.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
- 6.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·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
- 7. 제9조·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
- 8. 재외공관 근무·연수(국외 훈련)·공무 출장 등 해외 장·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
- 9.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-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3항의 시행지침을 제·개정하였을 때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.
- 1.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
- 2. 각급기관은 본부로 통보
- 제5조(외국인 접촉절차)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의 '외국인 접촉 (특이사항 등) 신고'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접촉사실이 방침결정,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.
 - 1.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
 - 2.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정부기관 구성원
 - 3. 외국 언론인
 - 4.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중 본부 및 각급기관 업무와 무관한 자
 - 5.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
 -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여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접촉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6조(특이사항 신고) ① 소속 구성원은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의 '외국인(특이사항 등)신고'를 작성하여 즉시

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1.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·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
- 2.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
- 가. 자신의 직무·사생활·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
- 나. 소속 구성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
- 다.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
- 라.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・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
- 마.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
- 3.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
-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7조(외국 정보·수사기관원 접촉) ① 소속 구성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·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 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의 '외국 정보·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'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외국정보·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의 '외국 정보·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'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.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구성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·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 후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방첩담당관은 소속 구성원과 외국 정보·수사기관의 구성원과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한다. 다만,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한다. 이 경우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한다.

- 제8조(외국 정보·수사기관 방문 등)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·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·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·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 문의 및 협조 필요사항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 접촉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방첩정보포털의 '국제 정보협력 계획·결과 통보'제출 및 별도의 방첩 교육 계획 수립·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제9조(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)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1. 외국인 근무자가 제6조,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2. 외국인 근무자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 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 등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.
- 제10조(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)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(영문 신상기록서)를 제출받아 유지·관리하여 야 한다.
 - 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각급기관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) 방첩담당관은 외국 등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

다.

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・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·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 ·확인하고 이를 차단
- 2.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, 부서 이동·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"직무상 알 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"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
- 3. 담당업무와 무관한 민감 자료·데이터·기록물 등에 대한 접근·열람·복사 ·반출·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·시행
- 4. 전산시스템 사용, 전산 자료의 접근·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(상황실, 전산실 등)을 지정
- 5. 외장형 저장장치(USB 등)의 무단 반입·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 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
- 6.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,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토록 조치
- 7. 그 밖에 외국 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 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
- 제12조(방첩교육)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, 초빙 교육, 방첩정보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, 전문 강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제13조(접촉기록 등 관리) 방첩담당관은 동 시행지침에 따라 접수·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및 별표 1에 따라 발생년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외국인 접촉 신고서

	성 명	성 별	
접 촉 대 상 외 국 인	국 적	소 속 (연락처)	
	국 내 체 류 지 (연 락 처)		
접촉 개요	접촉 일시	접촉 요청자	
1 百寸 / 7 五	접촉 장소	1 설득 표정자	
접 촉 목 적 지 원 자 료			
지 원 자 료			
및			
접촉 내용			

년 월 일

신 고 자 소속 직급 연락처 성명 (인)

※ 접촉 내용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 중 주요 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, 특정 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, 과분한 선물·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

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

_	성 명	성 별
접 촉 외 국 인	국 적	소 속 (연락처)
(내 국 인)	국내 체류지 (연 락 처)	
	접촉 일시	접촉 장소
접촉 개요	접촉 방법	접촉 요청자
	접촉 사유	향후 접촉일정
특 이 사 항 내 용		

년 월 일

신 고 자 소속 직급 성명 (인)

※ 국가기밀 등을 탐지·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,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,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

<u>외국 정보·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서</u>

71 - 2	성명	성 별	
접 촉 외 국 인	국 적	소 속 (연락처)	
	국 내 체 류 지 (연 락 처)		
	접촉 일시	접촉 장소	
접촉 개요	접촉 방법	접촉 요청자	
	접촉 사유	향후 접촉일정	
접 촉 목 적 지 원 자 료			
및			
접촉 내용			

년 월 일

신 고 자 소속 직급 연락처 성명 (인)

* 접촉 내용란에는 접촉시 나는 대화 중 주요 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, 특정 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, 과분한 선물·식사 제공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

(앞쪽)

DE	ERSONAI		NEODM/	ATIO	N	Γ		
* FOR OFFICIAL USE O		- "		4110	14			
* FOR OFFICIAL USE O	Last/First/Mic	əlbb	DATE OF		Month/Day/Year			[PH0T0]
NATIONALITY			BIRTH		Cit	y/Country	($(3cm \times 4cm)$
(include any			PLACE OF		•	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		
dual nationality)			BIRTH					
FOREIGNER			DATE& PLACE YOU		N	Month/Day/Year		City/Country
REGISTRATION NUM			ENTERED					
BER			KOREA					
ADDRESS			NOILA			GENDER		
WORK PLACE			JOB/POSIT	ΓΙΟΝ 				
TELEPHONE								
NUMBERS	HOME :		WORK :		MOBILE :			
(Include Area								
code)			DATES			GRADUATIO	 N	LOCATION
	NAME OF		ATTENDED	DEGRE	DEGREE/ DATE MAJOR (MM/Y			(Address &
	SCH00L		M/YY-MM/YY)	MAJO				City/Country)
EDUCATION								

EMPLOYMENT HISTORY	EMPLOYEF REFERENC			TES EMPLOYED	POSI	TION	LOCATION (Address & Cit y/Country)		
FAMILY INFORMATION	RELATION FULL N/ Last/First/			DATE OF BIRTH	ОССЕР	ATION	PHONE NUMBER		
RELATIVES & ACQUAINTANCES IN KOREA	RELATION	FULL NAME Last/First/Middle		DATES KNOWN (MM/YY-MM/YY)	OCCUPATION	POSITION	PHONE NUMBER		

I understand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form may be submitted for verification against the crimi nal records and credit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clearance policy. I declare that the inform ation I have provided is true and complet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. I understand that any false statement or deliberate omission in the information I have given in this form may disqualify me from employment or make me liable to disciplinary action which may include dismissal.

- 1	\neg	
	IΔ	ı ⊢

SIGNATURE :

■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[별지 제5호서식]

외국인 근무자 현황

작성 기관:

작성일:

신원 사항											관리 실태		Н			
한글 이름	¹⁾ 영문 이름	생년 월일 (성별)	국적	외국인 등록번호	소속	부서	²⁾ 채용 형태	직급	직책	담당 업무	채용 기간	체류 자격	참고	⁴⁾ 전산 문서 접근 권한	관리 ⁵⁾ 보유 여부	매 뉴 얼 ⁶⁾ 매뉴얼명

- 1) "영문 이름"은 여권 표기에 따릅니다.
- 2) "채용 형태"는 임기제공무원, 전문경력관, 특수경력직공무원, 특정직공무원(개별 법령에 따름), 공무직(무기계약·단기계약) 등을 의미합니다. 파견·연수 등의 사유로 근무 중인 외국 정부 및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공무원은 파견 또는 연수로 적고 참고 사항에 源 소속을 적습니다. (예: 美 내무부 등)
- 3) "참고 사항"은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관련 특이사항, 징계 경고 이력, 규정 위반 전력 여부 등을 말합니다.
- 4) "전산・문서 접근 권한"은 유 또는 무로 표시합니다.
- 5) 관리매뉴얼의 "보유여부"는 유 또는 무로 표시합니다.
- 6) 관리매뉴얼의 "매뉴얼명"은 소속기관에서 외국인 근무자 관리를 위해 제정하였거나 또는 적용 중인 규정·지침·매뉴얼 등을 의미합니다.